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2063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도현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5.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873165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D 주식회사에게 1,5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6. 22. 확정되었다.

나. D 주식회사는 2013. 4. 30. 원고에게 위 가.항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5. 30. 그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E의 소유였는데, 2018. 5. 9. E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E의 배우자이자 C의 어머니, 상속지분 3/9), C, F, G(이상 각 상속지분 2/9)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8. 6. 5. 접수 제4116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무자력인 채무자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는 위 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인 E이 피고에게 남겨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모든 상속인들이 당연히 피고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형식상 협의분할의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와 C이 모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일 뿐이다.

나. 피보전 채권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채권이 2010. 6. 22.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인 2020. 3. 17.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역수상으로는 원고의 위 판결채권이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효완성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위 판결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판결채권에 기하여 2013. 7. 19.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7251호 및 2018. 4. 25.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27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725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8. 채무자 C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2013. 8. 27.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273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21. 채무자 C에게 송달되었고, 2018. 4. 30.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채권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C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거나, 그 수령자가 C이 아닌 타인에게 송달된 이상 C에게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5193 판결 참조),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C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정정호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62.8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 지 의 표 시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 6462㎡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646200분의 5900

- 이 상 -

